

임시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4년 11월 21일(금) 13:00-16:00

□ 개최장소 : 이랜드빌딩 회의실

□ 총이사수 : 8명

□ 출석이사 : 5명(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박영희 이사, 배극수 이사)

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산하시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산하시설인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재수탁 신청과 지원계획에 대해 의안을 개진하고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재수탁 사유와 진행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2012년 5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서울 강동 지역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양질의 복지서비스지원으로 수탁이전보다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노인복지 이용시설로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노인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재수탁 운영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수탁 기간은 2015년 5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법인전입금은 5년간 총8억(매년 1억 6천만원)이 소요됨을 설명하다.

▶ 배극수 이사는 현재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발굴 및 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위기가정 발굴 및 지역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동의하다.

▶ 윤형주 이사는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2012년 5월 이랜드복지재단 수탁이후 2014년 현재까지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바, 앞으로도 노인복지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 재청하다.

▶ 박영희 이사는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 재청하다.

▶ 이에 이경준 이사장이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의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재수탁 신청건과, 재수탁 운영 시 5년간 법인전입금 총 8억원(매년 1억6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5년간 법인전입 내역

(단위 : 천원)

합계	2015(6~12)	2016	2017	2018	2019	2020(1~5)
800,000	8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

<제 2호 의안> 산하시설 하당노인복지관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 심의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산하시설인 하당노인복지관의 재수탁 신청과 지원계획에 대해 의안을 개선하고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하당노인복지관 재수탁 사유와 진행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하당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 이용시설로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으로, 앞으로도 목포지역 노인복지발전을 위해 하당노인복지관 재수탁 운영이 필요함을 수탁사유로 설명하고, 수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간 법인전입금 지원 금액은 3년간 총 6억원(매년 2억원)이 소요됨을 설명하다.

▶ 이태용 이사는 현재 목포시의 경우 전체 인구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당노인복지관이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동의하다.

▶ 배국수 이사도 하당노인복지관이 2005년 7월 이랜드복지재단 수탁이후 2014년 현재까지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바, 앞으로도 노인복지분야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한 기관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 재청하다.

▶ 박영희 이사도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 재청하다.

▶ 이에 이경준 이사장이 '산하시설 하당노인복지관의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 심의'의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하당노인복지관의 재수탁 신청건과, 재수탁 운영 시 3년간 법인전입금 총 6억원(매년 2억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 하당노인복지관 3년간 법인전입 내역

(단위 : 천원)

합계	2015	2016	2017
600,000	200,000	200,000	200,000

이경준 이사장은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3호 의안> 2014년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2014년 산하기관의 추경 예산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산하기관을 운영하면서 제출한 추경예산서와 같이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고, 입소자부담금 및 기타사업비의 증가와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후원금의 증가, 감소 등 예산 변동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3,328,830천원, 마포구립 창전데이케어센터 395,750천원, 봉화군노인복지관 915,740천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2,605,531천원,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 265,222천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2,719,305천원, 서구노인복지센터 755,003천원의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을 설명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정영일 사무국장의 설명을 토대로 2014년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립 창전데이케어센터, 봉화군노인복지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복지센터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사들의 의견개진과 심의를 구하다.

▶ 박영희 이사는 제출한 추경예산서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 바,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승인에 동의함을 표하다.

▶ 윤형주 이사가 동의 재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4년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 건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4호 의안> 2014년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예산전용 심의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2014년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데이케어센터, 마포데이케어센터의 예산과목 전용조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제출한 예산과목 전용조서를 바탕으로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데이케어센터, 마포데이케어센터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근거하여 복지관 및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의거,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원가 절감액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하며 중랑데이케어센터, 마포데이케어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재산조성비의 예산전용을 통해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 심의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단위:원)

관	항	목	전 용 년월일	2014년도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용 후 예 산 액	전용내용	전용사유
경상운영보조사업				297,205,650	(5,312,540)	297,205,650		
사무비	업무 추진비	회의비	11.18	1,720,000	△32,000	1,688,000	* 회의경비 원가절 감 사업비로 전용	사업비 예산증감
소계				1,720,000	△32,000	1,688,000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1.18	30,767,840	△2,185,640	28,582,200	* 운영경비 원가절감 사업비로 전용	
		공공요금	11.18	41,633,200	△237,600	41,395,600		
		제세 공과금	11.18	17,752,610	△452,600	17,300,010		
		기타 운영비	11.18	7,080,000	△1,680,000	5,400,000		
소계				97,233,650	△4,555,840	92,677,81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11.18	27,100,000	△724,700	26,375,300		
소계				27,100,000	△724,700	26,375,300		
사업비	사업비	상담사업	11.18	4,052,000	463,000	4,515,000	* 사업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액	
		사회교육	11.18	41,410,000	369,700	41,779,700		
		정서함양	11.18	58,590,000	586,000	59,176,000		
		기능회복	11.18	7,500,000	△167,400	7,332,600		
		자원봉사육성	11.18	25,600,000	1,453,000	27,053,000		
		지역복지협동	11.18	17,700,000	2,785,480	20,485,480		
		노인정보화	11.18	11,000,000	△11,740	10,988,260		
		재가복지	11.18	3,300,000	△19,500	3,280,500		
		노인자원 봉사대	11.18	2,000,000	△146,000	1,854,000		
소 계				171,152,000	5,312,540	176,464,540		

<중랑데이케어센터>

(단위: 원)

관	항	목	전 용 년월일	2014년도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용 후 예 산 액	전용내용	전용사유
보조금			11.18	11,000,000	(3,600,000)	11,000,000		
사무비	인건비	급여	11.18	3,490,000	3,600,000	7,090,000	사무비 내의 차량비 3,600천원을 급여로 항간전용 하고자 함	
	운영비	차량비	11.18	7,510,000	△3,600,000	3,910,000		
	소 계			11,000,000	3,600,000	11,000,000		
데이케어			11.18	4,071,330	(357,720)	4,071,330		
사무비	인건비	퇴직적립금	11.18	2,357,300	△357,720	1,999,580	사무비 내의 퇴직 적립금 358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항간전용 하고자 함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1.18	1,714,030	357,720	2,071,750		
	소 계			4,071,330	357,720	4,071,330		
실비사업			11.18	22,439,112	(2,000,000)	22,439,112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및수수료	11.18	12,660,000	△2,000,000	10,660,000	사무비 내 수용비 및 수수료 1,000천원 을 인건비의 퇴직적 립금으로 항간전용 하고자 함	
	인건비	퇴직적립금	11.18	4,642,453	1,000,000	5,642,453		
		사회보험부 담금	11.18	5,136,659	1,000,000	6,136,659		
소 계				22,439,112	2,000,000	22,439,112		
합 계				37,510,442	(5,957,720)	37,510,442		

<마포데이케어센터>

(단위:원)

관	항	목	전 용 년월일	2014년도 예 산 액	전 용 액	전 용 후 예 산 액	전용내용	전용사유
장기요양수입사업			11.18	104,818,000	(2,619,000)	104,818,000		
사무비	인건비	급여	11.18	84,056,000	2,400,000	86,456,000	재산조성비 2,619천원 을 사무비로 관간전 용 하고자 함	센터 내 인력 보강 에 따른 인건비 예 산 부족으로 재산 조성비에서 사무비 로 예산 전용 필요
		사회보험 부담금	11.18	11,318,000	219,000	11,537,000		
		소계		95,374,000	2,619,000	97,993,000		
재산조 성비	시설비	시설비	11.18	9,444,000	△2,619,000	6,825,000		
		소계		9,444,000	△2,619,000	6,825,000		
합 계				104,818,000	(2,619,000)	104,818,000		

▶ 이경준 이사장은 정영일 사무국장의 설명을 토대로 2014년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데이케어센터, 마포데이케어센터의 예산과목 전용조서(안)에 대해서 이사들의 의견개진과 심의를 구하다.

▶ 배극수 이사는 제출한 예산과목 전용조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어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전용 심의에 동의함을 표하다.

▶ 이태웅 이사가 재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이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4년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예산전용 심의의 예산 전용을 승인하게 됨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5호 의안>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이랜드복지재단 산하시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개정(안) 및 심의 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효과적인 관리운영과 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신규지침의 반영을 위해 운영규정 개정 및 심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참석 이사들이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이태웅 이사가 본 건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및 심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동의하고, 배극수 이사가 동의재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6호 의안> 산하시설 광주 서구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폐업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산하시설 광주 서구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폐업 심의 건에 대해 심의를 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인 서구노인복지센터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을 제공하여왔으나,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당해사업의 폐업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200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시행 초기 사업 수행 인프라와 기관들이 준비되지 않아 사업수행 참여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현시점에는 충분한 사업인프라가 구축되어 그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을 설명하고, 서구노인복지센터는 진행 중인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보다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폐업을 심의요청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이태웅 이사는 산하시설 광주 서구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폐업 심의 건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며 적절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동의함을 표하다.

▶ 윤형주 이사가 재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이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산하시설 광주 서구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폐업 심의 건'을 승인하게 됨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이경준 이사장은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은 16시 00분

2014년 11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인)

이 사 이 태 응 (인)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박 영 희 (인)

이 사 배 극 수 (인)